

2025 청년 소상공인 해외 온라인시장 진출

[쇼피(Shopee)] 참여 소상공인(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인천시 소재 청년 소상공인의 해외 온라인시장(Shopee) 진출 지원을 위하여 「2025 인천시 청년 소상공인 해외 온라인시장 진출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6월 12일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해외 온라인 쇼핑몰(Shopee) 진출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예비창업자 포함)
- 지원규모 : 00개사
- 지원내용

구분(지원사업)	세부 내용	비고	
교육	(1차) 온라인 (Zo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피 시장 및 쇼피코리아 지원 역할 소개 · 국가별 관세, 부가세, 수수료, 패널티 등 정책 안내 · 페이오니라 가상계좌 개설 및 셀러 계정 생성 · 상품 등록, 판매 가격 및 마진설정, 배송 정책 · 마케팅, 고객관리, 주문취소(반품/환불), 대금 정산 등 	(주) 팜글로벌
	(2차) 오프라인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정 생성 및 가상계좌 연결 · 셀러 샵 설정, 상품 등록, 샵 이미지 등록 · 쇼피 상품 등록 · 판매가 및 마진설정, 마케팅 방법, 주문처리, 물류 등 	인하공업 전문대학
서포터즈	실습 지원	· 교육 상세 내용에 대한 실습 보조 지원	
	시장 분석	· 국가별, 제품별 등 참여 소상공인 요청사항 관련 정보제공	인천대 (GTEP)
멘토링	1:1멘토링	· 교육 내용에 대한 쇼피 유경험자(셀러) 멘토링 지원	별도 선정

○ 자격요건

- 공고일('25. 6. 12.) 기준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구분	내용
휴·폐업 및 부도	▫ 공고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 신용보증 및 재보증 제한 업종 영위자 붙임 3-1, 3-2

○ 사업기간 : '25. 7월 ~ 9월

○ 신청기간 : '25. 6. 12.(목) ~ **6. 30.(월) 18:00까지** ※ 마감 시간 엄수

2. 신청 방법

○ 접수처 : 전자메일(sbsc19@naver.com) 제출

○ 제출서류(행정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① 참여신청서 1부 **붙임 1**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각 1부 **붙임 2-1, 2-2**
- ③ 사업자등록증명 1부
-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⑤ 부가세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1부

3. 추진 절차

사업 안내 및 모집	참여기업 선정	교육 및 실습지원	상점 시범운영
참여 모집공고 및 접수	요건 및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	소피 입점 및 운영 등 교육 (인하공전 등)	멘토 1:1 코칭 (온·오프라인 지원)
6. 12. ~ 6. 30.	7. 1~3.(예정)	7월 중(예정)	8~9월 중

※ 지원기관 등 이해관계자 내부 상황 등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4. 선정 방법

- (평가 및 선정) 자격 검증(적/부) ⇒ 선정평가 ⇒ 최종 선정
 - 자격 검증 : 보증 제한기업(재보증 제한 포함) 등 기본요건 검증
 - 선정 평가 : 평가위원회를 통해 상품 경쟁력, 사업 적합성 등 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정)
- 선정평가 기준

(단위 : 점)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사업 적합성 (정량) (50)	· 인천 관내 오프라인 매장 운영	30	
	· 現 사업자 업력	5년 이상	20
		3년 이상 ~ 5년 미만	15
		1년 이상 ~ 3년 미만	10
		1년 미만	5
제품 경쟁력 (정성) (50)	· 상품 품질 및 기술력	30	
	· 해외 온라인시장 진출 경쟁력(적합성 등)	20	
계		100	

동점자 선정

- ① 자격 검증(적/부) 통과자 대상, 평가 결과 60점 이상(고득점순) 선정
 - 60점 미만이어도 모집 상황(미달) 등에 따른 득점순 선정 가능
- ② 동점자의 경우, 평가항목 중 '사업 적합성', '제품 경쟁력' 순 고득점 업체 선정

5. 유의 사항(선정 취소)

- 선정 이후 신청서류의 허위사실이 판명된 경우
- 선정 이후 사업을 지원받기 위한 절차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 선정 이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는 연락두절 등 불성실한 태도로 사업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정부 해외 판로지원을 받은 경우
- 기타 재단에서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처리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본인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 · 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해외 온라인 시장(쇼피) 입점 및 운영 사업의 효율적 지도를 위한 활용 및 연계 기관(인천광역시)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 · 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휴대폰 등), 이메일, 사업 현황, 행정 정보(세금 체납 여부, 매출자료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 · 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멘토 신청 등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연계 기관 : 인천광역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해외 온라인 시장(쇼피) 입점 및 운영 사업 지원을 위한 지원자의 정보수집·조회 및 활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주택, 직장, 휴대전화), 이메일, 학력, 경력, 자격증, 각종 실적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10년까지 보유 · 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멘토 신청 등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에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중

성명 : _____ (서명)

【붙임 2-2】

본인 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경영지도)

본인은 「전자정부법」제43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 (본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본인정보 제공시스템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제공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본인정보에 관한 사항

구분	본인정보	항 목	보유기관
1	소득금액증명	상세 항목은 [별첨] 본인정보 제공 요구 항목 참조	국세청
2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국세청
3	(국세)납세증명서		국세청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청
5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국세청
6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7	폐업사실증명		국세청
8	휴업사실증명		국세청
9	지방세납세증명서		행정안전부
10	주민등록 등·초본		행정안전부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12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국민연금공단

※ 전체항목값(278개 데이터)

본인 정보를 제공 받는 제3자에 관한 사항

- 제3자(이용기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비스 : 경영지도

- 본인정보 제공목적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제4호」에 따른 지역신보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지도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본인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일괄 수집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활용

본인 정보 제공 방법 : 일회적 제공

자료 보유 및 이용기간 : 본인정보 제공 요구일로부터

※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현장 방문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정부법」 제43조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제공 요구합니다 (예)		제공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니오)	
------------------------	--	------------------------------	--

2025년 월 일

생년월일		성 명		(서명)		확인자		(서명)
연 락 처								

【붙임 3-1】 보증제한기업(신용보증규정 제9조)

1. 휴업 중인 기업
2.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 정한 신용정보 중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 포함)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 등을 보유한 기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도판단정보대상자인 기업
 - 가. 대표자
 - 나. 실제경영자
 - 다.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
4.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5. 제8조 제1항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6. 제8조 제1항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가.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채무면탈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나.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다.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라. 신보 및 기보의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 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 사태에 있는 기업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가. 제7호의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다음 각 1)부터 2)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 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 2) 업무 집행 사원 중 무한책임사원
 - 나. 제7호의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 다. 제7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 라. 채무면탈기업 이외의 자로써 재단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한 것과 관련하여 소송중이거나 확정판결을 받은 자
9. 제7호 기업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인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10.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범위는 “보증심사운용요령” 에서 따로 정한다.

11.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다만, 연체를 정리한 기업은 제외한다.
12. 금융 부조리 관련 기업으로서 보증제한 기간이 경과 하지 아니한 기업.
13. 재단, 중앙회, 신보 및 기보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및 동 기업의 연대보증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14. 기타 재보증기관과의 재보증계약에서 정한 재보증제한 대상기업. 다만, 지역특화산업 또는 지역 향토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등은 제외
15.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재단의 브릿지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 ②기보증회수보증 및 회생지원보증의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보증할 수 있다.
다만, 휴업 중인 기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금융 부조리 관련 기업에 대한 보증제한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부조리 관련기업에 대한 보증제한 운용기준」을 따른다.
 - ⑤신용 상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보증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이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제한할 수 있다.
 - ⑥특례보증 등은 제1항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례보증 등 취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 운용할 수 있다.

【붙임 3-2】 재보증 제한 업종

재보증 제한 업종 (1/2)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21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2	무도 유흥 주점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주고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보증 제한 업종 (2/2)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 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 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 술집 등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건전 문화 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 ^{주)}

주) (운영형태) 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 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